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**보도자료**	http://www.mke.go.kr

2011년 2월 23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자료문의 :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응길과장, 최태준사무관(2110-4713)

지경부, 규제개혁으로 일자리창출과 미래성장동력 견인

- 산업단지내 산업시설구역에 대학의 입주 허용, 하수·하천수온도차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 범주에 포함 등 50여개 과제 발굴·추진 -

□ **지경부**(장관 : 최중경)는 **일자리 창출**과 **녹색 성장**을 **견인**하기 위해 금년도에 **50여개의 규제개혁과제를 발굴·추진**할 계획임

○ **진입규제완화, 신산업·신에너지 분야 육성, 기업환경개선** 등 규제개혁을 통해 **5% 경제성장**을 위한 **제도적 기반 마련**

□ 우선, **산업단지에 대학이 쉽게 입주**할 수 있도록 하고, **산업용지 최소 분할면적 제한**을 **완화**하여 **중소기업의 혁신역량**을 **제고**

① **대학이 산업단지내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**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 **인력양성-취업-R&D가 선순환**될 수 있는 **구조**를 **마련**

② 산업단지내 관리권자·관리기관 및 사업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**산업용지 최소 분할면적**(기존 1,650m^2이상) **제한**을 **완화**하여 **중소기업이 보다 용이하게 산업단지에 입주**할 수 있도록 개선

□ 또한, **LED 신조명 인증제도를 지속 개선**하고, **신재생에너지·대체천연가스 보급확대 기반**을 **마련**하여 **녹색성장**을 위한 **토대 마련**

③ **LED 신조명 분야**의 중복되고 복잡한 **인증제도를 간소화**하는 작업을 지속 추진함으로서 인증에 소요되는 **시간** 및 **비용 부담 완화**

④ **미활용에너지를 적극 활용**하고 **관련산업 육성**하기 위해 **하수·하천수 온도차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 범주에 포함**시키는 방안 적극 검토

⑤ **기존 화력 등 발전소 부지**(전원개발부지로 지정된 곳)에 **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추가로 건설**할 경우 **사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면제**하여 공기단축 및 비용 감소

○ 기존 전원개발부지에 추가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민원 등으로 인한 보상 비용, 건설지체 등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 **2012년 시행 예정인 RPS제도*하에서 기대효과**가 클 것으로 예상

* RPS (Renewable Portfolio Standards) : 발전사업자의 총발전량 또는 전기판매사업자 판매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원으로 공급 또는 판매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

⑥ **대체천연가스 품질기준을 마련('11.3월)하여** 바이오가스 등 **저탄소형 에너지를 보급하고 녹색성장을 견인**

□ **각종 검사·검정, 안전관리제도** 등을 **합리적으로 개선**하여 **국민과 기업의 경제적 부담**을 **최소화**

⑦ **계량기 정기검사* 미실시**에 대한 **과태료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**(품목별 세분화 및 부과액 조정)하여 **국민부담 경감**

* 계량에 관한 법률 제32조(검사)제2항에 따라 2년마다 1회 정기검사 실시

⑧ **주유소**(주유기 및 LPG미터) **계량기 검정주기 완화**(신규 설치후 재검정 주기가 2년인 것을 3년으로 완화)하여 주유사업자의 부담 경감*

* 매 검정시 업소당 평균 12만원의 검사비용이 경감 가능

⑨ **도시가스충전사업자**는 도시가스사업자(도매, 일반)보다 **완화된 안전관리규정을 작성**할 수 있도록 하여 **중소사업자의 부담 경감**

⑩ **안전수준평가제를 도입**하여 우수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해 **검사주기 등을 완화해 줌**으로서 **자율안전관리 체계로 전환**

□ **공장 등록 절차 간소화, 광해방지 승인기간 단축** 등을 통해 **기업의 사업 효율성 및 편의 제공**

⑪ **공장건축면적 500m^2 미만의 제조시설 설치는 사전승인대상에서 제외**하여 사업자 필요에 따라 공장등록 신청이 가능함으로서 **공장 등록 절차 간소화 및 행정비용 감소***

* 공장등록컨설팅 비용으로 건당 평균 200만원 감소

⑫ **광해방지사업계획 승인처리기간 단축**(30일 → 20일) 및 기간내 통지가 없으면 승인된 것으로 **의제하는 규정을 신설**하여 **광해방지 사업의 효율성 제고**

□ **MB정부**들어 **기업의 경영환경은 지속적으로 개선***되고 있는 바, **실물경제 총괄부서인 지식경제부**는 **기업과 국민이 규제개선 효과를 실질적으로 체감**할 수 있도록 **지속 노력**할 계획임

○ 금번 규제개혁추진계획에 선정된 과제의 **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**하는 등 **자체 모니터링을 강화**해 나갈 예정

○ **또한, 지자체 건의, 규제개혁 국민제안** 등을 통해 **현장중심적인 규제개혁과제**를 **상시적으로 발굴**하여 **정비**할 계획임

-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, 관련부처 등과 협조하여 경제단체, 개별기업 등의 건의사항도 수렴·반영

○ 이를 바탕으로 **신성장동력의 확충**과 **일자리 창출**이 **실물경제 활성화의 실질적인 촉매**가 되도록 노력할 것임

* 우리나라 기업환경평가 순위(World Bank, Doing Business 2011): ('08)23 → ('09)19 → ('10)16위

※ 별첨 : 지식경제부 2011년 주요 규제개혁 과제 (예시)

별첨 지경부 2011년 주요규제개혁 과제

① 대학의 산업시설구역 입주 허용

(지역경제총괄과 김형석 사무관, 02-2110-5593)

□ 현황

○ 산업단지 기업과 대학의 산학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간적 통합이 필요하나, 대학은 산업단지 중 땅값이 비싼 지원시설구역에만 입주가 가능하여 실질적으로 산단 입주가 어려움

□ 개선방향

○ 지식산업의 일종인 연구개발업에서 대학을 제외하는 규정을 개정하여,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학에 입주자격을 부여

○ 산학융합지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

□ 기대효과

○ 대학의 산업단지 입주 활성화로 산업단지 기업과 대학간 인력양성, R&D의 연계를 높여 고용 창출

② 산업단지 입주 최소 분할면적 제한 완화

(입지총괄과 최경용 전문관, 02-2110-5308)

□ 현황

○ 관리권자·관리기관·사업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(건축물이 없는 경우)를 분할하려는 경우 1,650㎡이상으로 분할하도록 하여 소규모 제조업체의 산업단지 입지 어려움

□ 개선방향

○ 최소분할면적을 정하고 있는 이유(기반시설 보호 등)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, 산업단지 분할 최소면적을 1,650㎡이하로 완화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선

□ 기대효과

○ 부지면적 1,650㎡ 미만의 소규모 기업에게 입지를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기업환경개선 및 경쟁력 강화

③ LED 조명제품의 인증 간소화

(신산업표준과 김종오 사무관, 02-509-7294)

□ 현황

○ LED 신조명 분야의 인증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인증,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인증, 에너지 이용합리화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등 그 종류가 다양하여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

□ 개선방향

○ LED 신조명 분야에서 같은 시험항목의 경우 서로 인정해줌으로써 중복 시험을 줄이고 인증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절차를 간소화

○ 산업표준화법, 전기용품안전관리법,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등 3가지 법, 시행령, 시행규칙을 검토하여 법적 기반 마련 및 체계정비

□ 기대효과

○ 2000시간이 소요되는 광속유지율 시험항목 또는 내구성 시험항목은 한번 인증이 되어 공인성적서를 보유할시 다른 인증시험에서 면제 함으로서 추가인증에 소요 되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듬

④ 하수·하천수 온도차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에 포함

(신재생에너지과 홍순파 서기관, 02-2110-5402)

□ 현황

○ 지열이나 해수의 온도차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로 지정되어 있으나, 하수·하천수의 온도차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에 미포함

□ 개선방향

○ 전문가 검토, 업계의견 수렴 등을 통해, 하수하천수 온도차 에너지의 신재생에너지 범주에 포함여부를 검토

○ 신재생에너지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

□ 기대효과

○ 하천수·하수의 온도차에너지와 같은 미활용에너지의 적극 활용, 관련산업 육성·보급 및 기술개발에 기여

⑤ 기존 발전소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시 허가 면제

(전기위원회 정광세 사무관, 02-2110-5518)

□ 현황

○ 기존 발전소 부지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추가로 건설시 신규허가 또는 설비용량 증가(기존용량의 ±10% 초과)하는 경우에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

※ 발전사업관련 허가받는 사항중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허가 필요하나, 설비용량이 30만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용 전기설비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추가 설치하는 경우와 기존 용량의 10%이하 용량의 증설(감축)인 경우는 변경허가대상 제외

□ 개선방향

○ 발전사업자가 기존 발전소 부지내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추가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사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 대상에서 제외(전기사업법개정)

□ 기대효과

○ 기존 화력, 원자력발전소 부지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할 경우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면제하여 공기단축 및 행정비용 감소 유도

⑥ 대체천연가스 품질기준 제정으로 폐자원에너지 활용 촉진

(가스산업과 송지현 사무관, 02-2110-5468)

□ 현황

○ 도시가스사업법 개정(09.3월)으로 바이오가스, 나프타부생가스 등(이하 대체천연가스)"이 도시가스의 범위에 새로이 포함

- 현행 LNG의 가스 조성과 대체 천연가스의 조성이 상이하여 배관열화, 부식성, 연소성, 인체유해성 등 안전성 검증이 필요

* 현재는 사업자간 협의에 의해 품질기준을 설정하고 전용배관으로만 공급 가능('09.10 특례고시)

□ 개선방향

○ 대체천연가스 안정성 검증을 위한 품질기준 공동연구 추진하고 '천연가스 외의 도시가스 품질기준 등에 관한 고시' 제정('11.3)

□ 기대효과

○ 국내 폐자원에너지 활용 확대에 따라 에너지자립도 제고, 온실가스 감축, 환경오염물질 감소 등의 효과 기대

⑦ 정기검사 미실시 과태료 완화

(계량측정과 남하욱 연구관, 02-509-7231)

□ 현황

○ 계량에 관한 법률 제32조(검사)제2항에 따른 계량기의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(과태료 부과) 별표 17에 따라 일률적으로 10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

□ 개선방향

○ 동법 시행령 별표 17 내용 중 5호의 내용을 세분화하고, 접시 지시 및 판지시 저울에 대한 과태료를 20만원으로 개정

□ 기대효과

○ 세분화된 과태료 적용으로 과중한 과태료에 따른 국민의 부담 경감

※정기검사 대상 계량기를 품목별로 차등화(최대 100만원 → 20만원)

⑧ 주유소(주유기 및 LPG미터) 계량기 검사주기 완화

(계량측정과 남하욱 연구관, 02-509-7231)

□ 현황

○ 계량기의 정확성과 공정한 상거래를 위하여 주유소(주유기 및 LPG미터)는 최초검정 후 2년마다 재검정을 실시하고 있음.

* 계량에 관한 법률 제20조(검정), 동법 시행령 제21조(검정) 등

○ 주유기와 LPG미터에 대한 검정주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, 소비자에게 정량 주유를 위해 수시검사(단속)의강화를 통한 주유기 및 LPG미터의 오차 관리 실시

□ 개선방향

○ 신규 설치 후 검사주기가 2년인 것을 3~4년으로 완화하고, 다음 재검정부터는 2년주기로 실시하는 방안 모색

*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 개정

□ 기대효과

○ 검정시 총 11.6억원(12만원/업소 검사비용)의 주유소 경영부담 경감

- 주유소(경유, 휘발유 등) 12,300여개, LPG 충전소 7,000여개

⑨ 도시가스충전사업자 안전관리규정 작성부담 경감

(에너지안전팀 서동배 사무관, 02-2110-5444)

□ 현황

○ 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업무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도시가스사업법으로 이관됨에 따라('10) 도시가스사업자(도매, 일반)와 동일하게 복잡한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함(도시가스사업법 제26조)

○ 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경우 규모가 영세*하여 도시가스사업자(도매, 일반)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임.

*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CNG(압축천연가스)를 차량에 연료로 충전하는 사업자로 법정 안전관리자(1~2인)외에 전담조직을 가지고 전문적인 안전관리를 하기 어려움

□ 개선방향

○ 종전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적용시와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도시가스사업법 개정

□ 기대효과

○ 안전관리규정 작성 기간 단축

○ 안전성평가를 하기 위한 전문 인력 및 비용의 절감(1,000~2,000만원/5년)

⑩ 정기검사 및 안전관리규정 확인·평가주기 완화

(에너지안전팀 서동배, 02-2110-5444)

□ 현황

○ 도시가스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시·도지사로부터 도시가스사업법령에 따라 매년 1회씩 정기검사 및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 등을 확인·평가 받고 있는 실정

□ 개선방향

○ 중장기적으로「안전수준평가제」도입을 통해 사업자의 안전관리수준 평가결과에 따라 정기검사 및 안전관리규정의 평가 주기를 탄력적으로 적용

* 안전수준평가제(QMA : Quantitive Management Assessment) : 사업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계량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자의 안전수준 정도에 따라 정기검사·안전관리규정 확인 평가주기·보험요율 등을 차등화해 주는 제도

□ 기대효과

○ 정부, 공사 등에 의한 타율안전관리를 사업자의 자율안전관리로 전환

○ 동종 타 사업자와의 안전수준정도 비교 및 경쟁을 통한 안전성 향상을 기대

⑪ 공장제조시설 설치 승인 대상 개선

(입지총괄과 최경용 전문관, 02-2110-5308)

□ 현황

○ 제조시설설치승인의 경우 공장건축면적 500㎡이상의 공장건축물에 일부 임대로 들어갈 경우 제조시설면적이 500㎡ 미만인 경우에도 제조시설 설치승인을 득해야 함

□ 개선방향

○ 등록취소된 공장건축물에 대하여 공장건축면적 500㎡ 미만으로 제조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립승인 기준과 동일하게 사전승인 대상에서 제외하여 사업자가 필요에 따라 공장등록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예정

□ 기대효과

○ 공장건축면적 500㎡미만의 제조시설 설치는 승인대상에서 제외하여 제조시설 설치를 통한 공장등록 절차 간소화

- 민원처리기간 : 3일 단축
- 행정비용 : 평균 200만원 감소(공장등록컨설팅 비용)

⑫ 광해방지사업계획 승인처리기간 단축 및 의제규정 신설

(석탄산업과 송충섭 사무관, 02-2110-5497)

□ 현황

○ 지식경제부장관은 사업계획서의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여부 통지하여야 하며, 승인 내용을 관계부처와 시·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함.

□ 개선방향

○ 광해방지사업계획 승인기간 30일을 20일로 처리기간 단축

○ 광해방지사업계획승인 처리기간 내에 통지가 없는 경우 승인된 것으로 의제하고 자동 승인의 효력이 발생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

□ 기대효과

○ 자동승인에 따른 방해방지사업의 효율성 도모 및 처리지연으로 인한 불만 해소

* 광해는 오염성, 지속성, 축적성, 확산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적기에 광해방지사업을 시행치 못할 경우, 오염지역 확대와 오염도 증가로 인한 사업비의 증가 초래